

- ③ 입·퇴원일의 입원실료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의 정한 바에 의하여 계산하며 전과 또는 입원실 등급 변경일의 입원실료는 전입된 입원실의 요금을 정수한다. <개정 2001-6-20>

제6조 (연대보증금의 채임) 제요금을 본인 또는 보호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.

제7조 (제요금의 감면)

-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 대하여 제요금을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기할 수 있다.
1. 사회 공익상 필요하거나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 2. 국정자문회의 현직 의장 및 그 배우자와 위원
 3. 기타 원장이 합당한 사유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<개정 94-12-31>
- ② 제1항 제1호의 제요금을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기할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에 의하여 이에 따른 입증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.

제8조 (본인 직원의 공상치료) 본원 직원으로서 업무수행 중 공상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제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.

제9조 (진료촉탁)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동차 보험회사 기타 일반 기업체의 장이 소속직원의 치료비를 후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촉탁 의뢰가 있을 경우에는 진료종료 후에 해당기관장에게 제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.

제10조 (제증명 수수료 면제) 공공기관에서 직접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자동차보험 공단 등에서 의료원에서 치료한 실적이 있는 환자의 치료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제증명 수수료는 면제할 수 있다.

부 칙 <1986-4-30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1986-12-3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1991-10-7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1994-5-7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.